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5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정재·이헌승

김성원 • 박충권 • 김예지

김위상 • 윤상현 • 김소희

이인선 · 송석준 · 박수민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를 관리·운용하도록 하고,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,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·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상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1항 중 "제공받을"을 "제공받으며,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"로 한다.

제118조제1항제1호 중 "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(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	제115조(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
사업의 관리・운용) ① 중앙회	사업의 관리·운용) ①
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	
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	
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	
업재기의 기회를 <u>제공받을</u> 수	<u>제공받으며, 재</u>
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	<u>난으로부터 보호받을</u>
위한 공제사업(이하 "소기업·	
소상공인공제"라 한다)을 관리	
• 운용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8조(소기업・소상공인공제의	제118조(소기업・소상공인공제의
사업) ① 소기업·소상공인공	사업) ①
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	
다.	
1. 소기업・소상공인공제에 가	1
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<u>폐</u>	<u>다음</u>
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	는 <u>는</u>
금의 지급	
<u><신 설></u>	<u>가.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

	재난의 발생으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
	<u>경우</u>
<u><신 설></u>	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경우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